

농림축산식품부령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연 월 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이 공포(공포 : '22.10.18, 시행 : '23.4.19) 됨에 따라, 변동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한편, 농업인의 직불금 지급 신청 편의 증진 및 지급대상자 확대에 따른 실경작 확인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7~'19년 간 직불금 지급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조항 삭제(제11조 제2항)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 중 '17~'19년 간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실적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외함

나.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 방법 확대(안 제11조 제1항)

농업인이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스마트폰 등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다.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실경작 확인 절차 개선 (안 제11조 제2항)

이·통장 또는 농지등 소재지 거주자 2명에게 실경작 확인을 받아야 하는 현행 규정을 이·통장과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변경함

라. 논활용직접지불제를 전락작물직접지불제로 명칭 변경(안 제32조~제38조, 별표7)

'23년부터 논활용직불제가 전락작물직불제로 개편 시행됨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마.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를 규정하는 조항 삭제(안 제33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를 시행령 제5조와 시행규칙 제33조에서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를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함

바. 공익직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방법 개선(안 제40조 제1항)

공익직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 공개방법 중 읍·면·동(마을회관 등 포함)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을 삭제함

사.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서 서식 변경(안 별지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서 양식에 전년 지급면적 정보와 금년 지급면적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미 실시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2022.12.중순. ~ '23.1. 중순.)

3) 행정규제 : 해당없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제출하되”를 “제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호 가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부분 본문”을 “본문”으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을 “농지등임”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부분 본문”을 “본문”으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을 “농지등임”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을 “농지등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1) 본문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장·통장의 확인과 농지

등 소재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2인 이상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장·통장은 경작사실확인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발급대장을 제1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4장제4절의 제목 “논활용직접지불제도”를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를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4조의 제목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을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논활용직접지불금을”을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로,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논활용직접지불금”을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33조”를 “영 제5조”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논활용직접지불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논활용직접지불금위원회(이하 “논활용직접지불금위원회”)”를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이하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논활용직접지불금위원회”를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로 한다.

제3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논활용직접지불금위원회”를 각각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로 한다.

③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를 대표하고,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36조의 제목 “(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등에 대한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신청”으로, “논활용직접지불금의”를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논활용직접지불금위원회”를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의 발급)”을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의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를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로,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을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으로,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을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논활용직접지불금”을 각각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을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논활용직접

지불금”을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홈페이지와 읍·면·동(마을회관 등 마을별 공공장소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을 “홈페이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마목 중 “논활용직접지불금:”을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으로,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마목 중 “논활용직접지불금:”을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으로, “논활용직접지불금의”를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로 한다.

별표 7의 제목 중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등록 제한기간 (제39조 관련)”을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등록 제한기간 (제39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가목 위반행위란 가목 중 “논활용직접지불금”을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1) 위반행위란 1) 중 “논활용직접지불금”을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으로 하며, 같은 란 중 “논활용직접지불금”을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2) 위반행위란 2) 중 “논활용직접지불금”을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으로 하며, 같은 란 중 “논활용직접지불금”을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위반행위란 1) 중 “논활용직접지불금”을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으로 하며, 같은 란 중 “논활용직접지불금”을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2)가)의 지급제한 기준란 중 “논활용직접지불금”을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2)나)의 지급제한 기준란 중 “논활용직접지불금”을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3)의 지급제

한 기준란 중 “논활용직접지불금”을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부터 별지 제4호서식 까지,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논활용”을 “전략작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기본직접지불금(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농업인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조해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난은 등록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9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농업인 번호	경영정보변경일	처리기간	90일
------	------	------------	--------	---------	------	-----

1. 일반현황

① 등록신청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② 경영주인 농업인	성명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마을명)	농업인 번호 전화번호	신청유형 축산·시설 농가여부	※ 안내문 참조 []축산농가 []시설농가
③ 경영주 외의 농업인	성명 생년월일	농업인 번호	경영주와의 관계 배우자	

④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등록신청인 기준) ※ ⑥-1 '기본'란의 "기본직접지불금종류 선택"에서 "소농직접지불금"을 선택한 경우만 해당되며,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가족관계를 작성합니다.

④-1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세대주 포함) ※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

④-2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가족 구성원 ※ ④-1에 기재하지 않은 구성원만 작성합니다.

		-			-
		-			-

1 소농직접지불금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세대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신청을 받습니다.

④-1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관계'란에 등록신청인을 기준으로 "본인, 배우자, 부, 모, 자, 녀 등"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 내 모든 세대원을 작성합니다.

④-2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를 작성합니다.

2 소농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중 제출한 가족관계 인적정보가 전년도 신청서와 동일한 경우는 ④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 작성 및 해당 증빙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위 가족관계 인적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자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 제공 동의서"(4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5쪽)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6쪽)"에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을 거부한 경우는 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등록에서 제외되며, 가족관계 인적정보를 고의로 미등록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지급 제한 처분을 받는다는 내용을 확인합니다. [] 확인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 농지등 및 농작물재배 /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⑥-1은 기본직접지불금(소농직접지불금, 면적직접지불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⑥-2은 선택직접지불금(전략작물직접지불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품목·면적은 ⑤-5의 재배품목 중 해당하는 품목과 재배면적을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인1 성명) (연락처)	(은 행 명) (계좌번호)	(등록신청인2 성명) (연락처)	(은 행 명) (계좌번호)
----------------------	-------------------	----------------------	-------------------

※ '소농직접지불금'은 농가 구성원 중 지급대상자(등록신청인)인 1명에게 지급합니다.

'면적직접지불금'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경영주인 농업인 또는 경영주 외의 농업인만 지급대상자(등록신청인)에 해당되며, 공익직접지불금 종류별로 등록신청인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⑤-1 농지일반				⑤-3 농지등 면적(m ²) A≥B+C+D				⑤-4 시설현황		⑤-5 품목별 재배면적		⑥-1 기본직접지불금 신청 (해당란 []에 √ 하시오)				⑥-2 선택 (전략작물)		⑥-3 등록 신청인 성명					
번호	농지등 소재지	농지등 소유자	⑤-2지 목 공부 실제	공부(A) A≥자경+임차		미이용		시설 종류	시설 면적 (m ²)	품목	노지 (m ²)	시설 (m ²)	전년 지급 면적	신청 면적 (m ²) E≤B +C	논발 구분	농촌 진흥 지역 여부 (○,×)	기본직접지불금종류 선택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 소농직접지불금" 선택, 1개라도 "미해당"인 경우 " 면적직접지불금" 선택]			전년 지급 면적	재배 품목	신청 면적 (m ²)	
				자경	임차 기간 (~)	실제 경작 (B)	휴경 (C)	폐경 (D)									소농 지급조건	신청· 소유면적 등					
																	1 농가내 모든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하	신청(경영) 면적의 합 (m ²)	[]해당 []미해당				
																	1-1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1만5천500제곱미터 미만	소유면적의 합 (m ²)	[]해당 []미해당				
																	2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의 영농 종사기간, 농촌 지역 거주기간이 등록신 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영농종사 _년 농촌거주 _년	[]해당 []미해당				
																	3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의 종합소 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		[]해당 []미해당				
																	3-1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의 합이 4천500만원 미만		[]해당 []미해당				
																	4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으로 인한 소득 금액이 5천600만원 미만, 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 금액이 3천800만원 미만		[]해당 []미해당				
합 계																	기본직접지불금종류 선택						
																	{ 소농직접지불금 면적직접지불금						

⑥-1 '기본직접지불금 신청'란은 6쪽의 작성방법을 참고바랍니다.

- 1의 면적을 초과하나 다른 요건(1-1부터 4)은 모두 충족하는 농가 중 면적직접지불금 금액이 소농직접지불금 지급단가보다 낮은 경우 소농직접지불금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기본직접지불금 신청면적 및 예상금액(전년도 기준)

구 분	소농직접지불금 신청내역		면적직접지불금 신청내역	
	신청면적(㎡)	예상금액(원)	신청면적(㎡)	예상금액(원)
농촌진흥지역 안 논밭				
농촌진흥지역 밖 논				
농촌진흥지역 밖 밭				
합 계				

4. 선택직접지불금 신청면적 및 예상금액(전년도 기준)

구 분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신청내역	
	신청면적(㎡)	예상금액(원)
농촌진흥지역 안·밖		
합 계		

* 신청면적 및 예상금액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지급대상 농지등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농지 매매, 임대차 등으로 신청면적이 변경된 경우는** 직접지불금 신청정보 입력·등록 과정에서 **소농직접지불금 또는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변경될 수 있으며** 예상금액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인 확인 사항 ※ 아래 내용을 반드시 읽어본 후, [] 확인란에는 V 표시합니다.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확인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확인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 등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확인
- 공익직접지불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기본직접지불금을 수령하거나, 지급요건 또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및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 및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이 환수조치되거나** 향후 **지급대상자의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확인
-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는 **등록신청인이 직접 확인·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등록신청인에게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확인

년 월 일

등록신청인1

(서명 또는 인)

등록신청인2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면장·동장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본인은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본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본인정보 제공시스템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 내용을 자세히 알으신 후 제공요구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본인정보에 관한 사항

본인정보	항목	보유기관
------	----	------

본인정보 제공요구 동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록지주지, 본인정보(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가족사항 부모·배우자·자녀 정보(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법원행정처(대법원)
	주민등록표등본	열람대상자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발급, 행정기관코드, 주민등록상태, 세대주의, 호주의, 현주소, 도로명주소-현재), 세대주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발급, 등록상태, 구성일, 구성사유, 전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호주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발급), 세대원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발급, 세대주관계, 세대편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행정동명, 주민번호·성명 정정이력(정정이전 주민번호·성명, 정정이후주민번호·성명, 주민번호·성명 정정일자, 주민번호·성명정정사유), 주소이력(성명, 전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주소, 기타1, 기타2, 도로명주소-이력), 현주소-상세지역정보(지역코드, 지역명), 현주소-상세상세주소(산, 지, 동), 현주소-상세특수주소(특수지명, 특수지동, 특수지호), 도로명주소상세(도로명코드, 지하건물구분, 건물본번, 건물무번, 층), 전입일자	행정안전부

2. 본인정보를 제공 받는 제3자에 관한 사항
 - 제3자(이용기관) :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서비스 : 기본직접지불금 소액자격을 확인 및 신청 서류 간소화
 - 본인정보 제공목적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3. 본인정보 제공 방법
 - 한시적 정기적 제공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업무 종료일부터 1년까지 보유·이용
 ※ 귀하는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을 위해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정부법」 제43조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시겠습니까? 예 ☐ 아니오 ☐

트루신첨의 선명 (선명, 50%) 100%

[illegible]

문단정보 보유기관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등록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경영주인 농업인, 경영주 외의 농업인, 그 외 가족 구성원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공익직접지불제도 담당 공무원이 공익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및 **공익직접지불금**,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수령정보**,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및 발농업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는 등록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43조의2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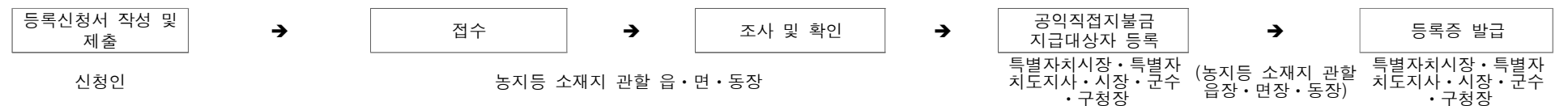
		년	월	일
등록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경영주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경영주인 농업인, 경영주 외의 농업인, 그 외 가족 구성원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합니다)와 중앙회의 자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그 밖의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의 농업·농촌 관련 융자·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합니다)의 확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지원안내·신청·등록·점검·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등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농자재 거래내역 등 지원 안내를 위해 필요하거나 신청·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농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제4조(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에 따른 등록한 농업경영정보를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 정보로 변경등록할 것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요청합니다. ☐ 동의 ☐ 거부
-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등록신청인 (개인정보 이용·제공·활용 동의자)	경영주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작성방법

1. 일반현황: 등록신청인과 관련한 사항을 등록합니다.

- ①란은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의 의사결정 및 농업소득의 귀속 주체가 되는 농업인을 말합니다.
 - 등록신청인별 연락처와 은행명, 계좌번호는 2쪽 상단에 작성합니다.
- ②와 ③의 경영주인 농업인, 경영주 외의 농업인 정보는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 ④란의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는 소농직접지불금 신청자에 한하여 작성하며, ④-1란은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관계'란에 등록신청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부, 모, 자, 녀 등"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 내 모든 세대원**을 작성합니다. ④-2란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신청을 받습니다.

2. 농지등 및 농작물재배 /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등록신청인의 농지등 및 농작물재배,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정보를 확인하여 등록합니다.

- ⑤-1란은 필지별로 나누어 작성한 농지정보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 ⑤-2란은 해당 농지등 소재지의 실제 이용 형태에 따라 논, 밭, 과수원, 초지,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⑤-3란은 해당 농지등 소재지의 면적을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자경·임차: 공부상 면적 기준, 자경 및 임차에 해당되는 각각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 * 증빙서류: 영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단, 임차는 임대차·사용차 계약서 등 무단으로 점유한 농지등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는 추가제출합니다)
 - 실제경작면적: 공부상 면적 중 실제 경작(농작물 식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면적입니다.(공부상면적 ≥ 실제경작면적+휴경면적+폐경면적)
 - 휴경면적: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토지이지만,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토지 면적입니다.(다만, 작부 체계상 다음 작물 재배를 위해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폐경면적: 잡목 등의 점유, 시설물 및 묘지 등이 설치되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농작물 재배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농지형상이 변경된 토지 면적입니다.
- ⑤-4란은 해당 농지등 소재지의 시설종류와 시설면적을 작성합니다.
 - 시설종류: ①온실(유리), ②온실(경질판), ③온실(비닐), ④육묘장(유리), ⑤육묘장(경질판), ⑥육묘장(비닐), ⑦재배사로 구분하여 번호를 적습니다. / 시설면적(㎡)은 해당 시설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 ⑤-5란은 해당 농지등 소재지의 품목별 재배면적을 작성합니다.
 - 재배품목: 해당 농지등 소재지의 농지등에 연간 재배하는 모든 재배품목을 적습니다.
 - 재배면적: 노지인 경우 노지란, 시설인 경우 시설란에 적습니다.
- ⑥-1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논·밭 구분 및 농촌진흥지역 여부는 자동표출됩니다)
 - '전년지급면적'란은 직전연도 직불금 지급면적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를 사전 조사한 결과 실제 경작이 가능한 면적입니다. 사전에 조사한 실제 경작면적이 사실과 다를 경우 농업인이 '신청면적'을 '전년지급면적'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신청연도에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조사 결과 실제 경작면적이 다를 경우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신청면적'란은 ⑤-3 '농지등 면적'의 실제경작(B)과 휴경(C)을 합한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논밭구분'란은 아래의 ㉔에 해당하는 경우 "논"으로, ㉕에 해당하는 경우 "밭"으로, ㉖에 해당하는 경우 "밭"으로 표시됩니다.
 - ㉔ "논"으로 표시 - 쌀 고 정: 1998. 1. 1. ~ 2000. 12. 31. 해당 농지를 논농업(논벼, 미나리, 연근, 왕골)에 이용하였을 경우
 - ㉕ "밭"으로 표시 - 밭 고 정: 2012. 1. 1. ~ 2014. 12. 31. 해당 농지를 밭농업에 이용하였을 경우
 - ㉖ "밭"으로 표시 - 조건불리: 2003. 1. 1. ~ 2005. 12. 31. 해당 농지등을 농업에 이용하였을 경우
 - '농촌진흥지역여부'란은 란은 농지등 소재지별로 농촌진흥지역은 "○", 농촌진흥지역 외의 지역은 "×"로 표시됩니다.
 - '기본직접지불금종류 선택'란은 등록신청인이 표 안의 1 ~ 4 까지 소농직접지불금 조건을 확인하고 해당된 경우는 해당란에 선택, 미해당된 경우는 미해당에 선택합니다. '기본직접지불금종류'는 모두 '해당'일 경우에는 '소농직접지불금'을 선택하고 '미해당'이 1개라도 있는 경우에는 '면적직접지불금'을 선택합니다.
 -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서,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갖추고 주민등록표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을 말합니다.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란 기본직접지불금의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을 의미합니다.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보아 농가 내 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⑥-2란은 아래 사항을 참고해서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재배품목과 신청면적을 작성합니다.
 - '재배품목'란은 전략작물직접지불금에 해당하는 품목을 작성합니다.
 - '신청면적'란은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재배품목의 신청면적을 작성합니다. 이때 품목·면적은 ⑤-5의 재배품목 중 해당하는 품목과 재배면적을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⑥-3란의 '등록신청인 성명'란은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경영주인 농업인 또는 경영주 외의 농업인만 해당되며, 공익직접지불금 종류별로 등록신청인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3. 기본직접지불금 신청면적 및 예상금액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지급대상 농지등 기준으로 자동표출 됩니다.

4. 선택직접지불금 신청면적 및 예상금액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지급대상 농지등 기준으로 자동표출 됩니다.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시 첨부서류

Ⅰ.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면장·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지대장,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등록신청하는 농지등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다만, 같은 호 단서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인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다만, 같은 호 단서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1) 법 제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인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라. 법 제8조제2항제1호 각 목 및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이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등으로 인정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2조제3호 단서 및 같은 조 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시 첨부서류

- 다.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등록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라. 법 제9조제3항제3호 단서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가 아님을 증명하는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서류
- 마. 법 제9조제3항제5호에 따라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등을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등이 타인 소유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만,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적법한 권원 없는 점유·사용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농지등에 대해서는 소유권 및 임대권·임차권의 변동이 없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등록신청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가.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이하 "관내경작자"라 합니다)인 경우: 1)을 포함하여 총 2개 이상의 서류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경작사실에 관한 확인서. 이 경우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장·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장·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등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등의 경우에는 농지등 소재지 읍·면·동 공무원의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2)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으로 한정합니다)
 - 3) 농약·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으로 한정합니다)
 - 4)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으로 한정합니다)
 - 5) 벼 등의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 6) 그 밖에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 나. 관내경작자 외의 자의 경우: 가목1)의 서류와 가목2)부터 6)까지의 서류 중 2개 이상의 서류

4. 소농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시행령 제4조·제7조에 따른 지급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등록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가.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농가의 구성원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세대 분리를 증명하는 서류
- 나.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을 증명하는 서류
- 다.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영농 종사기간이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라.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마.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 및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 바.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또는 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II. 선택직접지불금(전략작물직접지불금) 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면장·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지대장,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농지가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에 해당하는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신청인이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까지의 경작사실확인서. 이 경우 타인의 농지를 경작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시행규칙 제3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본직접지불금(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조해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난은 등록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경영정보변경일		처리기간	90일
------	--	------	--	------------	--	---------	--	------	-----

1. 일반현황

① 등록신청인	대표자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법인주소지:		(마을명:)	
			(전화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② 법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③ 구성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책	농업인 여부		증빙서류
					농업인 번호	

※ 영농조합법인: 대표자 포함 농업인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 등기이사(또는 업무집행자) 및 농업인 출자자

⑤-2는 선택직접지불금(전력직물직접지불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품목·면적은 ④-5의 재배품목 중 해당하는 품목과 재배면적을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⑤ ‘공익직접지불금 신청’란은 **6쪽의 작성방법**을 참고바랍니다.

※ ⑤-1란의 신청면적은 ④-3 ‘농지등 면적’의 실제경작(B)과 휴경(C)을 합한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논·밭 구분은 농지등 소재지별로, 농촌진흥지역 여부는 농촌진흥지역은 "○", 농촌진흥지역 외의 지역은 "×"로 표시됩니다.

※ ⑤-2란의 전략작물 재배품목은 ④-5의 재배품목 중 해당하는 품목과 재배면적을 동일하게 작성하며, ⑤-3은 법인 내 농지등 소재지별 실경작자를 작성합니다.

3. 기본직접지불금 신청면적 및 예상금액(전년도 기준)

구 분	소농직접지불금 신청내역		면적직접지불금 신청내역	
	신청면적(㎡)	예상금액(원)	신청면적(㎡)	예상금액(원)
농촌진흥지역 안 논밭				
농촌진흥지역 밖 논				
농촌진흥지역 밖 밭				
합 계				

* 법인은 기본직접지불금의 '면적직접지불금'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신청면적 및 예상금액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지급대상 농지등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농지등 매매, 임대차 등으로 신청면적이 변경된 경우는 예상금액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선택직접지불금 신청면적 및 예상금액(전년도 기준)

구 분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신청내역	
	신청면적(㎡)	예상금액(원)
농촌진흥지역 안·밖		
합 계		

등록신청인 확인 사항 ※ 아래 내용을 반드시 읽어본 후, [] 확인 란에는 V 표시합니다.

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확인
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확인
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등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확인
4. 공익직접지불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및 수령하거나, 지급요건 또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및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 및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이 환수조치되거나 향후 지급대상자의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확인
5.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는 **등록신청인이 직접 확인·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등록신청인에게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확인

년 월 일

등록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장·면장·동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확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등록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록신청인의 농지등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국토정보시스템),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농업경영 및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교육 이수 정보	교육인력포털시스템(agriedu), 해당 개별교육관리시스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후계농/우수후계농업경영인시스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해당 개별사업관리시스템
농업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축산업 등록제·허가제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친환경농산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정보	친환경농산물 및 농산물우수관리 정보시스템
농산물 안전성조사 정보	세이프큐(SAFE Q) 정보시스템, 식품행정통합시스템
토양 환경조사 정보	토양환경정보시스템(흙토람)
농약 판매이력관리에 관한 정보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공익직접지불금,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밭농업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등록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대표자와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및 **공익직접지불금**,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수령정보**,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및 밭농업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는 등록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43조의2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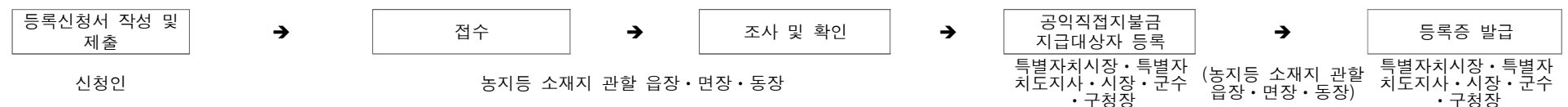
		년	월	일
등록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대표자와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합니다)와 중앙회의 자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그 밖의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의 기타 농업·농촌 관련 융자·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합니다)의 확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지원안내·신청·등록·점검·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등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농자재 거래내역 등 지원 안내를 위해 필요하거나 신청·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5.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업경영정보의 등록)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농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제4조(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 정보로 변경 등록할 것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요청합니다. [] 동의 [] 거부
-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등록신청인 (개인정보 이용·제공·활용 동의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작성방법

1. 일반현황: 농업법인과 관련한 사항을 등록합니다.

①란은 법인등기부상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법인 소재지(마을명 포함),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 전화번호는 법인사무소에서 이용하는 것을 적되, 법인이 소유·이용하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대표가 사용하는 것을 적습니다.
- * 직접지불금 신청자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수령은행 및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2. 농지등 및 농작물재배 /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해당 농업법인의 농지등 및 농작물재배,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정보를 확인하여 등록합니다.

④-1란은 필지별로 나누어 작성한 농지등정보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④-2란은 해당 농지등 소재지의 실제 이용 형태에 따라 논, 밭, 과수원,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④-3란은 해당 농지등 소재지의 면적을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자경·임차: 공부상 면적 기준, 자경 및 임차에 해당되는 각각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 증빙서류: 영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단, 임차는 임대차·사용차 계약서 등 무단으로 점유한 농지등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는 추가제출합니다)

- 실제경작면적: 공부상 면적 중 실제 경작(농작물 식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면적입니다.(공부상면적 ≥ 실제경작면적+휴경면적+폐경면적)

- 휴경면적: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토지이지만,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토지 면적입니다.(다만, 작부 체계상 다음 작물 재배를 위해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폐경면적: 잡목 등의 점유, 시설물 및 묘지 등이 설치되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농작물 재배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농지형상이 변경된 토지 면적입니다.

④-4란은 해당 농지등 소재지의 시설종류와 시설면적을 작성합니다.

- 시설종류: ①온실(유리), ②온실(경질판), ③온실(비닐), ④육묘장(유리), ⑤육묘장(경질판), ⑥육묘장(비닐), ⑦재배사로 구분하여 번호를 적습니다. / 시설면적(㎡)은 해당 시설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④-5란은 해당 농지등 소재지의 품목별 재배면적을 작성합니다.

- 재배품목: 해당 농지등 소재지의 농지등에 연간 재배하는 모든 재배품목을 적습니다.

- 재배면적: 노지인 경우 노지란, 시설인 경우 시설란에 적습니다.

⑤-1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논·밭 구분 및 농촌진흥지역 여부는 자동표출됩니다)

- '신청면적'란은 ④-3 '농지등 면적'의 실제경작(B) 면적과 휴경(C) 면적을 합한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논밭구분'란은 아래의 ㉮에 해당하는 경우 "논"으로, ㉮에 해당하는 경우 "밭"으로, ㉮에 해당하는 경우 "밭"으로 표시됩니다.

㉮ "논"으로 표시 - 쌀 고 정: 1998. 1. 1. ~ 2000. 12. 31. 해당 농지를 논농업(논벼, 미나리, 연근, 왕골)에 이용하였을 경우

㉮ "밭"으로 표시 - 밭 고 정: 2012. 1. 1. ~ 2014. 12. 31. 해당 농지를 밭농업에 이용하였을 경우

㉮ "밭"으로 표시 - 조건불리: 2003. 1. 1. ~ 2005. 12. 31. 해당 농지등을 농업에 이용하였을 경우

- '농촌진흥지역여부'란은 농지등 소재지별로 농촌진흥지역은 "○", 농촌진흥지역 외의 지역은 "×"로 표시됩니다.

⑤-2란은 아래 사항을 참고해서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재배품목과 신청면적을 작성합니다.

- '재배품목'란은 전략작물직접지불금에 해당하는 품목을 작성합니다.

- '신청면적'란은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재배품목의 신청면적을 작성합니다. 이때 신청면적은 ④-5의 재배품목 중 해당하는 품목과 재배면적을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⑤-3란은 법인 내 농지등 소재지별 실경작자를 기록합니다.

3. 기본직접지불금 신청면적 및 예상금액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지급대상 농지등 기준으로 자동표출 됩니다.**4. 선택직접지불금 신청면적 및 예상금액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지급대상 농지등 기준으로 자동표출 됩니다.**

공익직접지불금 등 신청 시 첨부서류

1.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면장·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지대장,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등록신청하는 농지등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이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합니다) 또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이하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이라 합니다)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등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는 서류 제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호 단서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1) 법 제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인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 2) 법 제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 나. 법 제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호 단서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1) 법 제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인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 2) 법 제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다.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 라. 법 제8조제2항제1호 각 목 및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이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등으로 인정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2조제3호 단서 및 같은 조 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나.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공익직접지불금 등 신청 시 첨부서류

다.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등록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라. 법 제9조제3항제3호 단서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가 아님을 증명하는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서류

마. 법 제9조제3항제5호에 따라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등을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등이 타인 소유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만,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적법한 권원 없는 점유·사용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농지등에 대해서는 소유권 및 임대권·임차권의 변동이 없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등록신청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이하 "관내경작자"라 합니다)인 경우: 1)을 포함하여 총 2개 이상의 서류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경작사실에 관한 확인서. 이 경우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장·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장·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등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등의 경우에는 농지등 소재지 읍·면·동 공무원의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으로 한정합니다)

3) 농약·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으로 한정합니다)

4)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으로 한정합니다)

5) 벼 등의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6) 그 밖에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관내경작자 외의 자의 경우: 가목1)의 서류와 가목2)부터 6)까지의 서류 중 2개 이상의 서류

II. 선택직접지불금(전략작물직접지불금) 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면장·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지대장,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농지가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에 해당하는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신청인이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까지의 경작사실확인서. 이 경우 타인의 농지를 경작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시행규칙 제3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기본직접지불금(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

※ 5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등록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6쪽 중 제1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5일
------	------	------	-----

① 등록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② 농지일반					③ 농지등 면적(㎡) A ≥ B+C+D					④ 시설현황		⑤ 변경 전				⑥ 변경 후				⑦ 변경 사유	
번 호	농지등 소재지	농지등 소유자	②-1 지목		공부(A) A ≥ 자경 + 임차			③-1 실제 경작 (B)	③-2 미이용		시설 종류	시설 면적 (㎡)	⑤-1 기본직접지불금 (소농직접지불금 • 면적직접지불금)		⑤-2 선택직접지불금 (전략작물)		⑥-1 기본직접지불금 (소농직접지불금 • 면적직접지불금)		⑥-2 선택직접지불금 (전략작물)		
			공부	실제	자경	임차	기간 (~)		휴경 (C)	폐경 (D)			논·밭 구분	신청 면적 (㎡)	재배 품목	신청 면적 (㎡)	논·밭 구분	신청 면적 (㎡)	재배 품목		신청 면적 (㎡)

* 기타 변경 사항: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등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등록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면장·동장

첨부서류	발급받은 등록증 등 (기타 구비서류 및 작성방법은 제5쪽부터 제6쪽까지 참고)	수수료 없음
------	---	-----------

※ 성명(법인명), 농지등의 농지등 소재지, 등록면적, 공적직접지불금의 종류, 수령금액 등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개됩니다.

등록신청인 확인 사항 ※ 아래 내용을 반드시 읽어본 후, [] 확인란에는 V 표시합니다.

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확인
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략작물 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확인
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 등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확인
4. 공익직접지불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기본직접지불금을 수령하거나, 지급요건 또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및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 및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이 환수조치되거나 향후 사업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음**입니다. [] 확인
5.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는 **등록신청인이 직접 확인·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등록신청인에게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확인 년 월 일

등록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면장·동장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등록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 거소신고사실 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록신청인의 농지등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국토정보시스템),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농업경영 및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교육 이수 정보	교육인력포털시스템(agriedu), 해당 개별교육관리시스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후계농/우수후계농업경영인시스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해당 개별사업관리시스템
농업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축산업 등록제·허가제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친환경농산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정보	친환경농산물 및 농산물우수관리 정보시스템
농산물 안전성조사 정보	세이프큐(SAFE Q) 정보시스템, 식품행정통합시스템
토양 환경조사 정보	토양환경정보시스템(흙토람)
농약 판매이력관리에 관한 정보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공익직접지불금,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발농업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등록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농업인용 등록신청인(경영주와 경영주 외의 농업인, 그 외 가족 구성원), 농업법인용 등록신청인(대표자,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 이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공익직접지불제도 담당 공무원이 **해당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및 **공익 직접지불금**,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수령정보**,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및 발농업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는 등록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43조의2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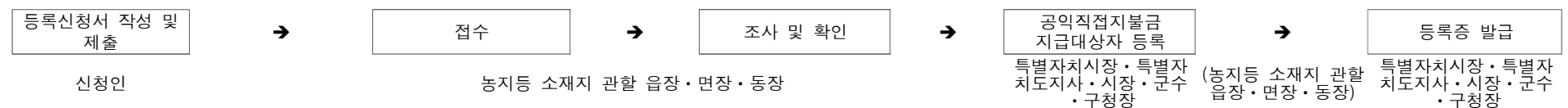
	년	월	일
등록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경영주(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농업인(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농업인용 등록신청인(경영주와 경영주 외의 농업인, 그 외 가족 구성원), 농업법인용 등록신청인(대표자,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합니다)와 중앙회의 자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농산물의 안전 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그 밖에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 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의 기타 농업·농촌 관련 융자·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합니다)의 확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지원안내·신청·등록·점검·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등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농자재 거래내역 등 지원 안내를 위해 필요하거나 신청·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5.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업경영정보의 등록)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농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제4조(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 정보로 변경 등록할 것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요청합니다. [] 동의 [] 거부
-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등록신청인 (개인정보 이용·제공·활용 동의자)	경영주(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농업인(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작성방법

※ 기본직접지불금(전략작물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청 사항은[「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46조제1항,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신청합니다.

-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농지등의 소재지, 소유자 등 농지 관련 사항
-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농지등의 자경(自耕)·임차(賃借)·휴경(休耕) 및 폐경(廢耕) 현황 면적
- ③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시설종류 및 면적
- ④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소농직접지불금 지급요건
- ⑤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면적, 재배작물 등이 변경된 경우

※ 기본직접지불금(전략작물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청서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경등록신청서 ①~⑤란까지의 자동표출된 자료를 확인하고, 변경사항을 ⑥란에 작성합니다.

2. 농지등이 신규로 추가될 경우 농지등의 소재지, 농지등 면적, 시설현황 등 신청정보를 등록합니다.

- ②란의 필지별로 나누어 작성한 농지정보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 ②-1란은 해당 농지등 소재지의 실제 이용 형태에 따라 논, 밭, 과수원, 초지,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③란은 해당 농지등 소재지의 면적을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자경·임차: 공부상 면적 기준, 자경 및 임차에 해당되는 각각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 * 증빙서류: 영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단, 임차는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등 무단으로 점유한 농지등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는 추가제출합니다)
 - 실제경작면적: 공부상 면적 중 실제 경작(농작물 식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면적입니다.(공부상면적 ≥ 실제경작면적+휴경면적+폐경면적)
 - 휴경면적: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토지이지만,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토지 면적입니다.(다만, 작부 체계상 다음 작물 재배를 위해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폐경면적: 잡목 등의 점유, 시설물 및 묘지 등이 설치되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농작물 재배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농지형상이 변경된 토지 면적입니다.
- ④란은 해당 농지등 소재지의 시설종류와 시설면적을 작성합니다.
 - 시설종류: ①온실(유리), ②온실(경질판), ③온실(비닐), ④육묘장(유리), ⑤육묘장(경질판), ⑥육묘장(비닐), ⑦재배사로 구분하여 번호를 적습니다. / 시설면적(㎡)은 해당 시설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3. 등록신청인(법인)의 공익직접지불금 변경등록 정보를 변경 전(前)과 변경 후(後) 내용을 등록합니다.

- ⑤-1란은 변경 전의 기본직접지불금의 ‘논·밭 구분’과 ‘신청면적’을 작성합니다. 이때 신청면적은 ③ ‘농지등 면적’의 실제경작(B)과 휴경(C)을 합한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논밭구분’란은 아래의 ㉔에 해당하는 경우 “논”으로, ㉕에 해당하는 경우 “밭”으로, ㉖에 해당하는 경우 “밭”으로 표시됩니다.
 - ㉔ “논”으로 표시 - 쌀 고 정: 1998. 1. 1. ~ 2000. 12. 31. 해당 농지를 논농업(논벼, 미나리, 연근, 왕골)에 이용하였을 경우
 - ㉕ “밭”으로 표시 - 밭 고 정: 2012. 1. 1. ~ 2014. 12. 31. 해당 농지를 밭농업에 이용하였을 경우
 - ㉖ “밭”으로 표시 - 조건불리: 2003. 1. 1. ~ 2005. 12. 31. 해당 농지등을 농업에 이용하였을 경우
- ⑤-2란은 변경 전의 선택직접지불금(전략작물)의 재배품목과 신청면적을 작성합니다.
- ⑥-1란은 변경 후의 기본직접지불금(소농, 면적)의 ‘논·밭 구분’과 ‘신청면적’을 작성합니다.
- ⑥-2란은 변경 후의 선택직접지불금(전략작물)의 재배품목과 신청면적을 작성합니다.
- ⑦란은 필지별로 변경사유[매매(증여, 상속 포함), 임대(자경농지 삭제), 임차종료(임차농지 삭제), 폐경, 기타(상세사유 기재)]를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공익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청 시 첨부서류

I.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법 제1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면장·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농지대장,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발급받은 등록증
2.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등록된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등록사항의 변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서류
 - 나.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서류. 다만,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변동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경작사실확인서만 첨부해도 됩니다.
 - 다.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소농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라. 법 제8조제2항제1호 각 목 및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이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등으로 인정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II. 선택직접지불금(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지대장,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농지가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에 해당하는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신청인이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까지의 경작사실확인서. 이 경우 타인의 농지를 경작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시행규칙 제3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기본직접지불금(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고서

※ 5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등록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6쪽 중 제1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5일
------	------	------	-----

① 등록신청인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등록신청인1 성명) (연락처)	(은 행 명) (계좌번호)	(등록신청인2 성명) (연락처)	(은 행 명) (계좌번호)
----------------------	-------------------	----------------------	-------------------

② 농지일반					③ 농지등 면적(㎡) A ≥ B+C+D					④ 시설현황		⑤ 기본(선택)직접지불금 신청				⑥ 변경 사유
번호	농지등 소재지	농지등 소유자	②-1 지목		공부(A) A ≥ 자경 + 임차		③-1 실제 경작 (B)	③-2 미이용		시설 종류	시설 면적 (㎡)	⑤-1 기본직접지불금 (소농직접지불금 • 면적직접지불금)		⑤-2 선택직접지불금 (전략작물)		
			공부	실제	자경	임차		휴경 (C)	폐경 (D)			논·밭 구분	신청 면적 (㎡)	재배 품목	신청 면적 (㎡)	

* 기타 변경신고 사항: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등록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면장·동장

첨부서류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양수·임차 또는 사용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은 제5쪽부터 제6쪽까지 참고)	수수료 없음
------	---	-----------

※ 성명(법인명), 농지등의 농지등 소재지, 등록면적, 공적 직접지불금의 종류, 수령금액 등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개됩니다.

등록신청인 확인 사항 ※ 아래 내용을 반드시 읽어본 후, [] 확인 란에는 V 표시합니다.

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고합니다. [] 확인
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고합니다. [] 확인
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등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확인
4. 공익직접지불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및 수령하거나, 지급요건 또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및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 및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이 환수조치되거나 향후 사업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확인
5.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는 **등록신청인이 직접 확인·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등록신청인에게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확인

년 월 일

등록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면장·동장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등록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 거소신고사실 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록신청인의 농지등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국토정보시스템),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농업경영 및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교육 이수 정보	교육인력포털시스템(agriedu), 해당 개별교육관리시스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후계농/우수후계농업경영인시스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해당 개별사업관리시스템
농업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축산업 등록제·허가제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친환경농산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정보	친환경농산물 및 농산물우수관리 정보시스템
농산물 안전성조사 정보	세이프큐(SAFE Q) 정보시스템, 식품행정통합시스템
토양 환경조사 정보	토양환경정보시스템(흙토람)
농약 판매이력관리에 관한 정보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공익직접지불금,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발농업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등록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농업인용 등록신청인(경영주와 경영주 외의 농업인, 그 외 가족 구성원), 농업법인용 등록신청인(대표자,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 이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공익직접지불제도 담당 공무원이 해당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및 **공익 직접지불금**,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수령정보**,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및 발농업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는 등록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43조의2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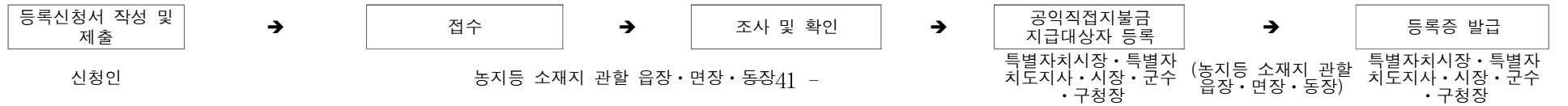
년 월 일		
등록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경영주(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영주외의 농업인(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농업인용 등록신청인(경영주와 경영주 외의 농업인, 그 외 가족 구성원), 농업법인용 등록신청인(대표자, 대표자와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합니다)와 중앙회의 자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그 밖에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 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의 기타 농업·농촌 관련 융자·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합니다)의 확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지원안내·신청·등록·점검·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등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농자재 거래내역 등 지원 안내를 위해 필요하거나 신청·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5.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업경영정보의 등록)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농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제4조(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 정보로 변경 등록할 것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요청합니다. [] 동의 [] 거부**
-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등록신청인 (개인정보 이용·제공·활용 동의자)	경영주(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영주외의 농업인(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작성방법

※ **기본직접지불금(전략작물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고 사항이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16조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46조제2항,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로부터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하는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경우
-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사망하거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 그 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경우
- ③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자로부터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임차 또는 사용차하는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경우

※ **기본직접지불금(전략작물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고서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신청인(대표자)과 관련한 사항을 변경등록합니다.

- ①란은 기본직접지불금(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변경등록신고하는 농업인(대표자)으로 농업경영의 의사결정 및 농업소득의 귀속 주체가 되는 농업인(대표자)을 말합니다.
 - 등록신청인별 연락처와 은행명, 계좌번호를 작성합니다.
 - ‘등록신청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란에서 ‘소농직접지불금’은 농가 구성원 중 지급대상자(등록신청인)인 1인에게 지급합니다. ‘면적직접지불금’은 등록된 경영주인 농업인 또는 경영주 외의 농업인만 지급대상자(등록신청인)로서 자격이 있으며, 해당 지급대상자 중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별로 등록신청인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업법인은 소농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으며, 면적직접지불금 또한 등록신청인(대표자)에게 지급됩니다.

2. 신청서 ②~⑤란까지의 자동표출된 자료를 확인하고, 변경사항을 작성합니다. 농지등이 신규로 추가될 경우 농지등의 소재지, 농지등 면적, 시설현황 등 신청정보를 등록합니다.

- ②란은 필지별로 나누어 작성한 농지정보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 * 사유구분: 매매(중여, 상속 포함), 임대(자경농지 삭제), 임차종료(임차농지 삭제), 폐경, 기타(상세사유 기재)
- ②-1란은 해당 농지등 소재지의 실제 이용 형태에 따라 논, 밭, 과수원, 초지,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③란은 해당 농지등 소재지의 면적을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자경·임차: 공부상 면적 기준, 자경 및 임차에 해당되는 각각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 * 증빙서류: 영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단, 임차는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등 무단으로 점유한 농지등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는 추가제출합니다)
 - 실제경작면적: 공부상 면적 중 실제 경작(농작물 식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면적입니다.(공부상면적 ≥ 실제경작면적+휴경면적+폐경면적)
 - 휴경면적: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토지이지만,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토지 면적입니다.(다만, 작부 체계상 다음 작물 재배를 위해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폐경면적: 잡목 등의 점유, 시설물 및 묘지 등이 설치되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농작물 재배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농지형상이 변경된 토지 면적입니다.
- ④란은 해당 농지등 소재지의 시설종류와 시설면적을 작성합니다.
 - 시설종류: ①온실(유리), ②온실(경질판), ③온실(비닐), ④육묘장(유리), ⑤육묘장(경질판), ⑥육묘장(비닐), ⑦재배사로 구분하여 번호를 적습니다. / 시설면적(㎡)은 해당 시설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 ⑤-1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논·밭 여부는 자동표출됩니다)
 - ‘논밭구분’란은 아래의 ㉠에 해당하는 경우 “논”으로, ㉡에 해당하는 경우 “밭”으로, ㉢에 해당하는 경우 “밭”으로 표시됩니다.
 - ㉠ “논”으로 표시 - 쌀 고 정: 1998. 1. 1. ~ 2000. 12. 31. 해당 농지를 논농업(벼, 미나리, 연근, 왕골)에 이용하였을 경우
 - ㉡ “밭”으로 표시 - 밭 고 정: 2012. 1. 1. ~ 2014. 12. 31. 해당 농지를 밭농업에 이용하였을 경우
 - ㉢ “밭”으로 표시 - 조건불리: 2003. 1. 1. ~ 2005. 12. 31. 해당 농지등을 농업에 이용하였을 경우
 - ‘신청면적’란은 ③ ‘농지등 면적’의 실제경작(B)과 휴경(C)을 합한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⑤-2란은 변경신고하는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재배품목과 신청면적을 필지별로 기록합니다.
 - ‘재배품목’란은 전략작물에 해당하는 품목을 작성합니다.
 - ‘신청면적’란은 전략작물 재배품목의 신청면적을 작성합니다.
- ⑥란은 필지별로 변경사유[매매(중여, 상속 포함), 임대(자경농지 삭제), 임차종료(임차농지 삭제), 폐경, 기타(상세사유 기재)]를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공익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고 시 첨부서류

- I . 기본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고: 변경등록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제3항 및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면장·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지대장,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등록된 농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임차 또는 사용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뇌사판정서 사본 등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 승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변경사항과 관련된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 II . 선택직접지불금(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시행령 제4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면장·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지대장,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임차 또는 사용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제2호·제3호·제5호의 서류

신·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제11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지급대상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되, 지급대상 농지등 소재지가 같은 시·군·구 내에서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지급대상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4조에 따른 소규모농가의 구성원 중 법 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 1인이 대표로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제11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 ① ----- ----- ----- ----- ----- ----- ----- ----- ----- <u>제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u> 하되----- ----- -----. ----- ----- ----- ----- ----- ----- -----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정보(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농지법」에 따른 농지대장(農地臺帳)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1. 등록신청하는 농지등이 지급 대상 농지등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다만,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58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농업소득 보전직접지불금(이하 “농업소

② -----

-----.

-----.

1. -----

-----.
-----. <단서 삭제>

득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
또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
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
조금(이하 “조건불리지역소득
보조금”이라 한다)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
는 농지등의 경우에는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라 제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가. 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 2000
 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
 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
 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
급받은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호 단서
 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이
 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

가. -----
 ----- 본문-----

 ----- 농지등임-----

로 제출해야 한다.

1) · 2) (생략)

나. 법 제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2014
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
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
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
급받은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호 단서
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이
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
로 제출해야 한다.

1) · 2) (생략)

다.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
라 2003년 1월 1일부터 20
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
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
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

-----.

1) · 2) (현행과 같음)

나. -----
----- 본문 -----

----- 농지등임 -----

-----.

1) · 2) (현행과 같음)

다. -----

----- 농지등임 -----

급받은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라. (생략)

2. (생략)

3. 등록신청하는 농지등에서 농
업에 종사하는 자임을 증명하
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이하 “관
내경작자”라 한다)인 경우:
1)을 포함하여 총 2개 이상
의 서류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경작사
실에 관한 확인서(이하
“경작사실확인서”라 한
다). 이 경우 농지등 소재
지를 관할하는 이장·통
장의 확인을 받되, 이장
·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
하는 때에는 농지등 소재
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
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라.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

--

가. -----

1) -----

--. 이 경우 농지등 소재
지를 관할하는 이장·통
장의 확인과 농지등 소재
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2인 이상의 확인
을 받아야 하며, 이장·
통장은 경작사실확인서
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급

민간인통제선 북쪽 지역에 소재한 농지등의 경우에는 농지등 소재지 읍·면·동 공무원의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 6) (생략)

나. (생략)

4. (생략)

③ (생략)

제4절 농활용직접지불제도

제32조(농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 제외 농지) (생략)

제33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영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농업인들의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농지가 같은 시·군·구에 있는 경우: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결한 읍·면·동

대장에 기록하고 발급대장을 제1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 6)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4절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제32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 (현행과 같음)

<삭제>

내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논
활용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농업인
등

2. 농업인들의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와 농지가 같은 시·군
· 구에 있지 않은 경우: 논농
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인이나 논농업 또
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농업법인

3. 논농업 또는 밭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
액이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
이나 논농업 또는 밭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4천500만원 이상
인 농업법인

제34조(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
상자의 등록신청) ① 영 제45조
제1항에 따라 논활용직접지불
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

제34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의 등록신청) ① -----
----- 전략작물직접지불
금을 -----

-----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지급대상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논활용직접지
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에
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농업
경영정보, 농지대장 또는 토지
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
는다.

1. ~ 4. (생략)

5. 제33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
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5조(논활용직접지불금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45조
제3항에 따라 읍·면·동에 두
는 논활용직접지불금위원회(이하
“논활용직접지불금위원회”
라고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
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② 논활용직접지불금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위
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급대상자 -----

-----.

② ----- 전략작물직접
지불금 -----

-----.

-----.

1. ~ 4. (현행과 같음)

5. 영 제5조-----

--

제35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
(이하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
원회”-----

-----.

②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 4. (생략)

③ 논활용직접지불금위원회의 위원장은 논활용직접지불금위원회를 대표하고, 논활용직접지불금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논활용직접지불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논활용직접지불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등에 대한 조사) ① 읍·면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신청인이 영 제44조에 따른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조사·확인해야 한다.

② 읍·면장은 등록신청서에 논

-----.

1. ~ 4. (현행과 같음)

③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를 대표하고,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

-----.

⑤ -----
-----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

-----.

제36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등에 대한 조사) ① -----
-----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신청-----

---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

-----.

② ----- 전

활용직접지불금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제1항에 따른 조사·확
인결과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
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
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7조(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
상자 등록증의 발급) 시장·군
수·구청장등은 제36조제2항에
따라 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신
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등록신청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읍·면장
을 거쳐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논활용직접
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발
급해야 한다.

제38조(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사
항의 변경등록 등) ① 영 제46
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
경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에
제34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

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

-----.

제37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 등록증의 발급) -----

---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
신청서 -----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자 등록대장-----

----- 전략작물직접
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

제38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
사항의 변경등록 등) ① -----

-----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부하여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 농지의 양수·임차 또는 사용차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농업경영정보, 농지대장 또는 토지대장 등 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1.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임차 또는 사용차를 증명하는 서류

2. (생략)

③ (생략)

④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신고서 및

-----.

② -----

----- 전락작물직접지불금 -----

-----.

1. -----
--- 전락작물직접지불금 ---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첨부서류를 제출받으면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사항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변경등록을 하고, 읍·면장을 거쳐 등록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해야 한다.

제39조(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영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등록 제한기간은 별표 7과 같다.

제40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읍·면·동(마을회관 등 마을별 공공장소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의 정

----- 전략작물직
접지불금 -----

-----.

제39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
----- 전략작물직접지불금

-----.

제40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① -----

----- 홈

페이지-----

-----.

1. -----

보 가. ~ 라. (생 략) 마. <u>논활용직접지불금</u>: 영 제4 5조제1항에 따른 <u>논활용직 접지불금 지급대상자</u>의 등 록 신청을 마감한 날 2.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 보 가. ~ 라. (생 략) 마. <u>논활용직접지불금</u>: 영 제4 9조에 따라 <u>논활용직접지 불금의</u> 지급을 완료한 날 ② · ③ (생 략)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u>전략작물직접지불금</u>: --- ----- <u>전략작물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u>--- ----- 2. -----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u>전략작물직접지불금</u>: --- ----- <u>전략작물 직접 지불금의</u> ----- ② · ③ (현행과 같음)
---	--